

인권헌장

현대중합금속은 용접 전문 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근로자, 협력사,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인권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기본 원칙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GC 10대 원칙 등 국제 기준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2조. 차별 금지

현대중합금속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을 근절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현대중합금속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제공한다.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하여 임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한다.

제4조. 인도적 대우

현대중합금속은 직장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누구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채널을 구축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징계 및 구제조치를 진행한다.

제5조. 강제 노동 금지

현대종합금속은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협박, 폭행, 인신매매, 노예 노동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의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제6조. 아동노동 금지

현대종합금속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가 근로행위로 인해 교육 기회를 제한 받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산업 안전보건 보장

현대종합금속은 안전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사업장(공사현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 근로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현대종합금속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고객의 이익을 증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한다.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윤리와 책임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거래를 투명하게 이행한다.

제9조 지역사회 인권 보호

현대종합금속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지 자유 등 인권을 보호한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현장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현대종합금속 임직원 일동